

스티커자판기 특소세 제외, 시간만을 남겨 놓았다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특소세 적용을 놓고 자판 산업계와 정부유관부서가 벌였던 긴가민가한 법정공방은 산업계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간 본협회와 관련업체가 공동대응해 한보전기를 대표업체로 해 진행했던 특소세 법적대응이 지난 11월 5일 고등법원 판결까지 승소함으로써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특소세 부과 철회는 이제 시간 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지방법원 특별1부(재판장: 김시승)은 지난 5일 피고인 동래세관이 한보전기를 대상으로 낸 항소심 소송에 대해 스티커자판기를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 30%를 부과한 이 사건의 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한보전기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판결은 지난 8월 삼원사진기기의 서울고등법원 승소판결에 이은 연이은 승소로 스티커자판기에 대한 특소세 제외는 이제 시간만을 남겨 놓은 확정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판결은 피고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했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보통 납세자 측이 1건도 아닌, 2건의 고등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상황을 고려할 때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중론이다.

업계는 이같은 결과를 크게 반기고 있다. 비록 뒤늦기는 했지만 부당하게 적용되었던 특소세가 철회된다면 권리보전을 해는 업체는 그동안 억울하게 납부해야 했던 특소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은 물론 향후 시장에 있어서도 제품의 적정 소비자 가격대 책정으로 인한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업계는 최종적으로 본 소송이 승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더욱더 굳건한 결속력을 응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개별업체의 경우 既납부되었으나 징수된 세금에 대해 철저한 권리보전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같은 권리보전이 안되면 최종 특소세 판결 승소시에도 既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니 해당 절차 및 기간별로 차질없는 권리보전 작업을 진행해 놓아야 한다.

특소세 조세불복 법적대응 일지

대표업체: 한보전기

- 1) 관세청 심사청구 제기: 97년 11월 20일
- 2) 심사청구 기각: 98년 3월 11일
- 3) 국세심판소 심판청구 제기: 98년 3월 26일
- 4) 심판청구 기각결정: 98년 7월 29일
- 5) 부산지방법원 행정소송제기(담당변호사 김백영): 98년 9월 11일
- 6) 행정소송 승소(1심): 99년 6월 2일
- 7) 피고인 동래세관 고등법원 항소제기
- 8) 동래세관 항소기각, 원고 한보전기 승소: 99년 11월 5일
- 9) 동래세관 대법원 항소제기 : 1999년 11월말

대정부 건의 현황

- 1) 재경원 특소세 적용 부당성에 대한 건의안 제출
- 2) 재경분과위원회에 대한 건의안 제출
- 3) 스티커자판기 특소세 부과 철회 건의를 위한 업계 탄원서 제출
- 4) 스티커자판기 특소세 부과 철회에 대한 청원 제출

특소세 항소심 승소 판결문 전문 게재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특별부

판 결

사 건 99누1892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항소인 김 용 규
광명시 광명7동 290의 23

소송대리인변호사 김 백 영, 박 성 호

피 고, 항 소 인 동래세관장

소 송 수 행 자 이 광 태

변 론 종 결 1999. 10. 8.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99. 6. 2. 선고 98구522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7.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19,326,410원,
교육세 5,797,920원, 부가가치세 2,512,430원, 가산세 2,763,670원
30,400,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이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반도체 및 전기관련제품의 수출입업체인 한보전기의 대표자로서, 관련기
계 제작 및 시험 운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인 Sticker
Magic "JALECO" Brand 10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1세트당 일본화
1,260,000엔에 수입하면서, 1997. 6. 30. 피고에게 HS관세율표 세번 9006.40-0000호
(즉석인화사진기), 관세율 8%,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7. 8. 이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9. 22. 이 사건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에 해당하는 고급사진기라고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특

별소비세율 20%를 적용하여 산정한 특별소비세 19,326,410원 및 이에 따른 교육세 5,797,920원, 부가가치세 2,515,430원 가산세 2,763,67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별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은 렌즈, 필름, 암상(暗箱) 등 사진기의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지 않았고, 그 작동원리도 기존의 사진기와는 다르므로 사진기로 볼 수 없고, 더구나 특별소비세의 과세취지 및 이 사건 물품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사진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이 사건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실의 인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지완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한국광학기기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물품은 고체촬상소자를 이용한 카메라(CCD Camera)를 사용하여 피사체의 얼굴 등을 찍어 IC ROM에 전송하고 위 IC ROM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36가지의 배경그림 중에서 어느 하나를 피사체의 얼굴 등과 합성한 다음 열복사식 칼라프린터를 사용하여 스티커의 형태로 출력하는 기계로서, 위 3가지 주요부분과 전과정의 제어를 위한 P.C.B. 기존의 사진이나 물품을 피사체로 하여 스티커를 만들 수 있는 Photo Vis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전체가 직사각형 형태로서 보통사람의 키를 조금 넘는 크기이다.

(나) 이 사건 물품은 이와 같이 피사체 촬영에서 고체촬상소자를 이용한다는 점, 출력과정에서 열복사식 프린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광학렌즈 및 감광성 필름을 사용하여 촬영하고, 감광성 인화지에 노광시켜 사진을 출력하는 방식인 기존의 사진기와는 다르나, 이 사건 물품이 출력하는 스티커는 합성된 배경을 제외하고는 그 피사체 실물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진기와 별반 차이는 없다.

(다) 이 사건 물품은 주로 소규모 점포나 영세상인이 구입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용 기기로 사용되고 있고, CCD 카메라의 제조원가는 일본화 10,000엔~20,000엔, Photo Vision의 제조원가는 일본화 20,000엔~30,000엔으로서 프린트의 제조원가인 일본화 120,000엔이나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인 일본화 1,260,000엔에 비하면 그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사체 촬영 및 그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사진기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결과물인 스티커는 실물을 그대로 반영하는 점에서 기존의 사진기와 별반 차이가 없고, 일반 소비자들도 이를 사진기와 같이 인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사체의 얼굴 등을 찍어 IC ROM에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CCD카메라나, 기존의 사진이나 실물을 피사체로 하여 이를 영상화하는 Photo Vision 등은 이른바 사진기로 볼 수도 있으나, 나머지 주요 부분인 위 IC ROM, 열전사식 칼라 프린터 등의 경우는 그 용도가 기존의 사진기와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기존의 사진기로 찍은 영상물을 인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들까지 이를 함께 사진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물품 전체가 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소정의 고급사진기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 제11항,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하 범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비추어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되,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물품의 경우 앞서 본 주요부분 모두 결과물인 스티커를 얻는 데에 없어서는 아니될 부분으로 그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더라도 이를 판정하기 어려워, 그 판정은 각 부분의 원가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 CCD 카메라와 Photo Vision 등이 차지하는 원가비율은 극히 낮고 오히려 다른 부분의 원가가 이보다 훨씬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물품은 법 소정의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가사 이 사건 물품 전체를 사진기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이나 법 시행령에는 고급사진기에 대한 아무런 개념규정이 없는데, 다른 관련규정의 체계 및 문언의 의미 등을 참작하여 보면, 법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고급사진기를 규정하면서 범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기준가격은 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그 기준가격

을 초과하는 사진기는 모두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는 의미에서 정한 가격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물품이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 법의 입법취지, 당해 물품의 사용방법, 주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가격 특히 통상의 용도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지 여부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물품은 주로 소규모 영세상인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스티커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그 주된 용도, 형태, 부품의 종류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가라고도 할 수 없는 점, 법시행령도 공중측량용, 증명사진전용 등 전문사진업자들이 구입하여 사용할 뿐 일반 소비자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사진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및 법은 주로 일반 소비자들에 의한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에 그 제정 목적이 있는 점 등 그 입법취지 및 이 사건 물품의 용도, 성질, 가격, 주 소비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을 특별소비세의 부과물품인 고급사진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물품이 고급사진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를 보나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1. 5.

재판장 판사 김시승 _____

판사 김태창 _____

판사 윤근수 _____